

2019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스타협찬 과업지시서

I. 과업개요

- 가. 과업명 : 2019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스타협찬
- 나. 과업목적:
- 1)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에 대한 고객의 인지도 및 신뢰도 향상
 - 2) TV·연예뉴스 등 대중매체로 패션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 3) 스타의 활동과 함께 제품 및 브랜드의 이미지 동반상승 효과
- 다. 과업기간: 2019.02.15. ~ 2019.12.31
- 라. 소요예산: 사천육백삼십팔만이천오백원 (₩46,382,500 부가가치세 포함)

II. 과업내용

가. 과업범위

- 1) 연예인 대상 홍보활동, 연예인 섭외, 연예인 대상 PPL
- 2) 연예인 제품 착용 건 언론노출
- 3) 업무보고 및 클리핑 제출

나. 세부내용:

- 1)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브랜드 상품의 미디어 노출
 - 협찬이 가능한 방송, 연예인 및 유명인의 범위를 협의하여 디자이너브랜드 이미지와 부합하는 매체 선정, 협찬 진행
- 2) 협찬 건에 대한 아웃풋 관리
 - 입주/졸업 브랜드 상품의 각 노출 횟수 조정 (특정 브랜드에 협찬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 매체 및 노출횟수에 대해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운영진 및 소속 디자이너와 협의 후 진행)
 - 클리핑 자료 파일 월별 제출
 - 월간 보고서 제출
 - 비 노출 브랜드에 대한 홍보방안 수립
- 3) 상품의 입고 및 출고 관리
 - 상품 수량, 로스, 오염 및 상태 수시 관리
- 4) 협찬 건에 대한 온라인 홍보
 - 각종 매체에 협찬 노출 건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기사화
- 5) 연예 동향 파악, 스타일리스트 풀 관리

다. 성과품 납품

- 1) 스포츠, 주별, 월별 보고 이메일로 첨부파일로 송부

- 2) 월별 보고는 인쇄물로 출력하여 1부 제출

Ⅲ. 과업수행지침

가. 일반사항 및 과업수행

1. 「2019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스타협찬 용역」 계약의 이행 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와 실행보고서 등 관련 문서 모두를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에 따른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사업내용의 수정, 보완, 추가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4.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사업 운영이 관계법규나 사업목적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과업 내용 해석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사업비 부정사용 및 과오사용에 대해서는 반환 또는 환수 조치하며, 이에 따르는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7.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8.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9.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10.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적격자로 과업수행조직을 구성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및 관련 기관·업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사업기간 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상호합의한 주요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1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과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배상해야 한다.

15. 본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은 발주기관 소유로 귀속한다.

나.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

1. 본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지적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한다.

3.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산출물이 계약상대자를 위한 별도의 수익 용도로 사용되거나,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이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얻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이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본 계약의 이행 외의 목적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브랜드의 홍보에 적절한 타깃 미디어를 선정해 홍보 기획과 집행에 이르는 전반적인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발주기관의 이미지 향상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연예인 대상의 협찬 증빙사진 혹은 방송 캡처 자료를 브랜드 보고자료 용도로 전달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위해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발주기관에 속한 각 부서와 원활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속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활동결과에 대해 월별 보고자료를 준비하여 익월 10일까지 정기적으로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브랜드 홍보활동과 관련해 발주기관은 언제든지 홍보활동 현황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요청에 응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브랜드 홍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정기적인 재고 조사 결과를 본사에 보고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일부 또는 전량을 반납한다.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협찬 중 발생한 오염 및 분실이 총 협찬 물량의 30% 이상일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다. 그 외의 손상되거나 분실한 협찬 제품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협의에 의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9. 매 차 협찬 물량의 반납 후 문제가 있을 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반납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2개월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

라. 발주기관의 의무

1. 발주기관은 계약으로 정한 홍보대행 비용을 월별로 계약상대자에게 입금한다.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독립된 개체임을 인정하고 발주기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서 이외의 활동을 인정한다.
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타 브랜드와의 홍보계약 체결에 있어 타당한 이유 없이 반대를 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의 홍보계약 이후, 경쟁이 되는 브랜드 없이 독점 진행을 원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계약 조건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4. 위의 과업내용 외의 행사 기획과 실행에 관한 경우, 별도의 계약에 의해 진행한다. 브랜드 이벤트, 세미나, 미디어 트레이닝, 연예인 섭외(행사 및 화보 등) 및 기타 프로모션 활동과 홍보/마케팅 자료 제작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 내용은 서로 협의에 따라 정한다.
5.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게 보고 목적으로 전달한 연예인 사진자료를 절대 브랜드 영입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온라인/오프라인 포함),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된 자료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지 않다.

마. 계약의 효력 및 해지

1.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사항의 이행 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는 상대방에 대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 다)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 라) 과업수행과정 중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때
- 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하거나 중대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 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사)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과업 수행 계획에 의한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용역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아) 계약상대자의 재산에 대해 제 3자의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 자) 폐업 또는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 차) 부도가 발생하거나 파산, 화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상기 사항에 해당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함은 물론, 선지급분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즉시 반환 조치하고 계약해지 조치가 진행되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끝.
4. 계약 종료 시점 전에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해지 시점까지 의거하여 홍보대행 비용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지출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함으로써 발주기관은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의무를 면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에 따른 권리나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바. 해석 및 관할

1. 본 계약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을 받고 이에 따라 해석된다.
2.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일반 상 관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3.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